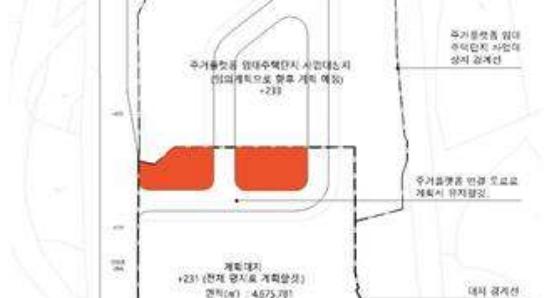


『추풍령 주거플랫폼 생활soc 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 설계용역』 질의답변 (2차)

NO	page	질 의 내 용	질 의 답 변
1-1	질의서 2-1 4-1 12-1	<p>지난 서면질의서의 내용에서 지침상의 “제2종근린생활 및 문화시설”의 용도확인사안에서 “제1종근린생활시설”로 계획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</p> <p>하지만 현재시행법률상</p> <p>1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.</p> <p>2.하지만, 영동군계획조례에는 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명시하고 있지않습니다.</p> <p>이에대하여,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와 추후 문제가 생기지않을지 우려가 되는바입니다. 확인부탁드립니다.</p>	<p>담당부서인 영동군 도시개발팀과 협의한 결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이 가능하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계획 할 것.</p>
1	1-2 질의서 7-1	 <p>지난 서면질의서의 내용에서 단지내도로 북측대지경계선과 도로사이공간(그림의 붉은부분)에</p> <p>“건축시설물과 부설주차장설치가능여부”에 대하여 북측은 조경부분이므로</p> <p>“부설주차장설치”가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</p> <p>그부분을 100%조경공간으로 사용예정이라면 건축물의 외부계단 또는 기둥등의 소규모의 건축시설물도 설치가 불가한지 그리고 배치상에서 건물의 처마(2층,3층의 슬라브부분)도 침범이 불가한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.</p>	<p>표시된 부분은 추후 상부 주거플랫폼 임대주택단지와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공터 즉 조경으로 계획할 것. 그에 따라 외부계단 및 기둥 및 처마등의 건축물이 넘어가는 것은 불가함.</p>

** 1개사 / 총 2개 질의